

고용노동부, 부처 협업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1,167억 원 체불 청산, 756억 원 지원

- '24년 설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실적 발표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주)태영건설 현장 63억 원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5.부터 2.8.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1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여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①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 [건설업 임금체불(억 원)] ('20) 2,779 → ('21) 2,615 → ('22) 2,925 → ('23) 4,36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주)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되었다.

▶ [기관장 현장방문] 44회,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출동 248회

특히, 1.15.부터 1.26.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주)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 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향후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 현장 체불해소 주요 사례

- ①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인건비 체불로 대구 동구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고, 대구청장과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1.24.)하여 원·하청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태영건설 본사와 발주처에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을 지속해서 지도한 결과, 1.31. 원청으로부터 피해근로자 390여 명의 11월 및 12월 임금 11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중단되었던 공사도 재개되었다.
- ② 서울 중랑구 공사현장에서 300여 명의 11월 임금 10.2억원이 체불된 상황에서, 서울북부지청의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1.18.) 체불상황을 확인하고, 서울북부지청장과 체불청산기동반이 재차 원·하청 간담회(1.26.)를 통해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 결과, 1.25. 11월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12월 임금도 설 명절 전에 전액 지급되었다.

②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누차 강조했듯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③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 원, 13,658명)도 이루어졌다.

한시적(1.15.~2.16.)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일→7일)하여 설 명절 전에 712억 원(12,918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하여 441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용자제도를 활용하여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손재형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



- ❶ 강릉지청은 설 명절 연휴 직전인 2.7. 속초지역의 한 호텔 신축공사에서 협력업체 건설근로자 3명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C동 발코니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 강동관, 이정우 근로감독관은 같은 날 15시경에 현장에 출동하여 원청의 공무팀장 등을 면담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기성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통해 체불 규모(60여 명, 2.8억 원)를 확인하였다. 이후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지도 끝에 농성 중인 근로자들은 16시경 자진해서 농성을 풀었고, 17시경 체불임금 전액이 청산됨으로써 위급한 사태가 해결되었다.
- ❷ 창원지청은 창원에서 화공기기 제조업 사업장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분쟁과 자금난으로 직원 236명의 '24년 1월분 임금 8.8억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2.2. 진정서 접수). 근로감독관 3명(이철학, 이동영, 김명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측의 부사장,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면담하고 청산지도로 설 연휴 전날인 2.8. 체불임금 전액이 청산되었다.
- ❸ 부산북부지청은 2.6. 저녁, 부산에서 항만하역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24.1월 임금 7.8억 원이 체불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였다. 노조는 작업거부 및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조은규 근로감독관과 박건우 근로감독관은 다음날인 2.7. 현장에 바로 출동하여 노사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한 결과, 임금정기급일인 2.8. 6.2억 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체불임금 1.6억 원도 설 연휴 직후인 2.14. 전액 지급되었다.
- ❹ 광주청 김설희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액을 이유로 9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자, '24.1.19.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3. 체불사업주를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